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52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최수진 · 박정훈 · 서범수
김정재 · 고동진 · 권영세
신성범 · 김예지 · 안철수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공제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제도 및 보험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예컨대 전통시장 상인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며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현황”을 “현황(풍수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현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3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3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3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 및 경영안

정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상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4(풍수해취약시장의 지정·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풍수해 위험이 높은 시장을 풍수해취약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취약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
2.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3. 그 밖에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풍수해취약시장 지정 또는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시장의 풍수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현황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여부 및 정비계획, 제17조에 따른 수방기준 및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결과,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4. 그 밖에 해당 시장의 풍수해 위험, 예방 및 대비 필요성, 이미 시행 중인 대책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풍수해취약시장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제3항에 따른 고려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보화 촉진”을 “정보화 촉진, 풍수해 등 재해 예방·대응 및 안전관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과 상점가의 <u>현황</u> 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③ · ④ (생 략) <u><신 설></u>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u>현황(풍수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현황을 포함한다)</u> -----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u>제24조의3(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관한 특례)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3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u>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u>

제3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풍수
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전
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
가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3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상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
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다.

<신 설>

제24조의4(풍수해취약시장의 지
정·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풍수해 위험이 높
은 시장을 풍수해취약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취약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
2.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3. 그 밖에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풍수해취약시장 지정 또는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시장의 풍수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현황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여부 및 정비계획, 제17조에 따른 수방기준 및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u>정보화 촉진</u>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u>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결과,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u> 4. <u>그 밖에 해당 시장의 풍수해 위험, 예방 및 대비 필요성, 이미 시행 중인 대책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④ <u>제1항에 따른 풍수해취약시장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제3항에 따른 고려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 ----- -----<u>정보화 촉진, 풍수해 등 재해 예방·대응 및 안전관리</u>----- ----- -----. ②·③ (현행과 같음)
--	---